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606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4. 03.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4. 03.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04. 1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정이유

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8. 10. 시행)」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고,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2023년 상반기 중에 폐지될 예정으로 2023년 3월까지 자체규정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함.

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유아 또는 학생 대상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시상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공모전 적용 제외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모전 시행 시 공모전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

다. 공모전 공고, 응모 방법(안 제5조 ~ 안 제6조)

- 공모전 시행 시 5일 이상 공고 의무(군 홈페이지,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 다양한 응모 방법 제공(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홈페이지 등)

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심사(안 제7조 ~ 안 제9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 5명이상(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2 이상 구성
-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수상작의 공개, 수상자 결정 취소(안 제10조 ~ 안 제11조)

-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상작 공개
- 부정행위 적발시 수상작 결정 취소 절차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해당사항 없음
- 2)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246
 - 가) 예고기간: 2023. 2. 20. ~ 2023. 3. 1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제정 조례안: 붙임

6.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조례 제정의 취지(필요성)

-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을 위해 공모·응모 방법과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안 제2조, 제3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전’, ‘응모’, ‘부정행위’의 정의 규정
 - 군 소속 직원 대상, 유아 또는 학생 대상, 시상금액 50만 원 이하 적용 예외
-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응모자격, 수상작 결정 방법, 시상내용, 심사 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검증방법 등을 규정
- 공모전 공모, 응모 방법(안 제5조, 제6조)
 -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5일 이상 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위원 인원·자격 등 구성 기준과 안건의 심의·의결 정족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부정행위여부 검증, 수상후보작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
- 수상작의 공개, 수상자 결정 취소(안 제10조, 제11조)
 -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상작 공개, 수상작 결정 취소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 종합의견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28호, 2022.8.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고,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2023년 상반기 폐지 예정임. 따라서 공모전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4. 12. 원안가결 함.